#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0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1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• 서영석 •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2조제14호, 제18조제1항, 제22조제1항, 제69조제1항, 제117조제2항, 제141조제1항, 제151조제1항, 제209조제5항제6호).

###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2조제14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18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22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69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117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1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151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법률 제17292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9조제5항제6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"총자산"이란 <u>대차대조표</u> 에	14 <u>재무상태표</u> -
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	
약비(未償却新契約費), 영업권	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	
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	
15. ~ 20. (생 략)	15. ~ 20.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자본감소) ① 보험회사인	제18조(자본감소) ①
주식회사(이하 "주식회사"라 한	
다)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	
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	
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<u>대차대</u>	<u>재무상</u>
<u>조표</u> 를 공고하여야 한다.	<u>태표</u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	제22조(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
통지)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	통지) ①
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	
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	
요지와 <u>대차대조표</u> 를 공고하고	<u>재무상태표</u>
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(質權	
者)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	

한다. ② (생 략) 제69조(해산의 공고) ① 상호회사

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 의 요지와 <u>대차대조표</u>를 공고 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117조(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) ① (생 략)

②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 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자회사의 <u>대차대조표</u>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

제141조(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 제기)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<u>대차대</u>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151조(합병 결의의 공고) ① 보

② (현행과 같음) 제69조(해산의 공고) ①	
<u>재무상태표</u>	
② (현행과 같음)	
제117조(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	
등) ① (현행과 같음)	
2	
③ (현행과 같음)	
제141조(보험계약 이전 결의의	
공고와 이의 제기) ①	
재무상	
태표	
② ~ ④ (현행과 같음)	
제151조(합병 결의의 공고) ①	

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보험회사의 <u>대차대조표</u>를 공고하여야 한다.

- ②·③ (생 략) 법률 제17292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
- 제209조(과태료) ① ~ ④ (생략)
  - ⑤ 보험회사의 발기인·설립위원·이사·감사·검사인·청산인, 「상법」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(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~ 5. (생략)
  - 6. 정관·사원명부·의사록·자산 목록·<u>대차대조표</u>·사업계획서· 사무보고서·결산보고서, 제44 조에서 준용하는 「상법」 제 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

재무상태표
<u>.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7292호 보험업법
일부개정법률
제209조(과태료) ① ~ ④ (현행
과 같음)
5
<u>.</u>
· 1. ~ 5. (현행과 같음)
6
재무상태표
<u>√∥   0 √∥π</u>

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 게 적은 경우 7. ~ 44. (생 략) ⑥•⑦ (생 략)

\_\_\_\_\_

7. ~ 44. (현행과 같음)

⑥·⑦ (현행과 같음)